

■ [서식 18]

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(□지급 □일부지급 □부지급) 결정 통지서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1. 사업장 현황			
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 주소		대표자	
담당자	성명	전화번호	
2. 신청 내용			
이름	생년월일	지원기간	지원금액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3. 지급 결정 내용			
이름	생년월일	지원기간	지원금액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		. . . 부터 . . . 까지	원
4. 부지급(일부지급) 사유			

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□지급 □일부지급 □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

(인)

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

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